



## 정보공개 운영 규정

규정번호	2-1-21
제정일자	2017. 8. 29.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기획처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신안산대학교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14.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9.11.14. 개정>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본 대학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처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2021.08.20. 개정>

② 정보공개담당자는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담당부서 지정)** 본 대학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기획처에서 전담하고,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정보공개처리부서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2021.08.20. 개정>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처리절차)** ① 본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9.11.14. 개정>

②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자체 없이 해당 처리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부서 간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처리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성질상 비중이 크거나 처리소관이 유사한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자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총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 소속 교직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부분 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제2장 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① 총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⑤ 공개대상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본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9조(공개방법)** 본 대학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9.11.14. 개정>

**제10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2019.11.14. 개정>

**제11조(운영지침)** 기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9.11.14. 개정>

### 제4장 위원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017.8.29. 신설> <2019.11.14. 개정>

**제1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정보공개책임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한다. <2023. 3. 30. 개정>

② 위원은 각 처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청구된 정보의 소관부서장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시위원은 해당 청구건에 대한 업무처리 종료 시까지로 한다. <2017.8.29. 신설> <2019.11.14. 개정>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결정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17.8.29. 신설> <2019.11.14. 개정>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7.8.29. 신설> <2019.11.14.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